

#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완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26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. 18.

발의자 : 박완주 · 윤관석 · 송갑석

이찬열 · 김현권 · 서삼석

김병기 · 표창원 · 신창현

최재성 · 금태섭 · 윤일규

의원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, 예외적으로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방식의 경우에는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정부는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에 대한 ‘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’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동 사업 추진 시 민원 및 책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.

이에 도매시장의 온라인 경매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2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2항제1호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5조(도매시장법인의 영업 제한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도매시장 개설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른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</p> <p>2. (생 략)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35조(도매시장법인의 영업 제한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경우(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